

2021년 8월 17일 발행인·편집인 : 이용섭·김용만 발행처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치평동) 전화 (062) 613-6343 팩스 (062)613-2129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84호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13일

광주광역시장

1. 개정이유

- 관할기관 간의 명확한 사무경계를 위해 위임사무 기준을 변경하고 행정 효율 증대를 위해 기존 위임 사무와 유사한 사무에 대한 관할기관을 통일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기준 변경(별표2)

- 대기환경보전에 대한 권한 위임 제의 사업장을 배출규모로 구분(1-5종)하여 관할기관 간 사무경계 혼란을 최소화[기후환경정책과]

나. 위임사무 추가(별표2)

-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와 유사한 사무(휴·폐업 등의 신고, 폐기물처리명령)에 대한 추가 위임[자원순환과]

다. 위임사무 삭제(별표2)

- 직접 수행 중인 책임수의사 지정 승인에 대한 위임 삭제[생명농업과]

라. 조항표기 수정(별표2)

- 「전기안전관리법」,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표기 현행화[에너지산업과]

마. 위임사무 문구 정정(별표3)

- 종합건설본부장에게 관리 위임하는 도로부속물 오기 정정[도로과]

3.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2일까지 광주광역시청(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kmr0920@korea.kr

- 팩스(fax): 062-613-2329

- 일반우편: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062-613-2354)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을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란에 입법예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별표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11.10.15, 2013.1.1., 2013.11.1., 2014.6.30., 2014.9.1., 2015.1.1., 2015.3.1., 2016.1.1., 2016.7.1., 2016.11.1., 2018.4.1., 2018.10.15., 2019.4.15., 2020.4.1., 2020.12.28., 202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회계과	1. 시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일반재산의 매각 (토지면적 330㎡ 미만 또는 재산가액 5천만원 미만) 나. 일반재산의 대부 및 유지관리 다. 일반재산의 제대장 및 증서보존 2. 시유일반재산의 분할합병의 신청 및 기타 시유재산 관리 3. 은닉 시유재산의 조사 및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및 제28조 같은법 제14조 및 제28조 같은법 제14조 및 제28조	구청장
사회복지과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원임면보고의 접수 나. 임시이사의 선임 다. 감사의 추천 라.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제22조3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제24조	
고령사회정책과	1. 노인복지시설 및 사업에 관한 보고·검사 등 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시비 등 보조금 지급 3.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원임면보고의 접수 나. 임시이사의 선임 다. 감사의 추천 라.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노인복지법 제42조 같은법 제4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제22조3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제24조	
장애인복지과	1. 장애인 실태 전수조사 2.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원임면보고의 접수 나. 임시이사의 선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제22조3	

	다. 감사의 추천 라.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제24조	
--	-----------------------------	----------------------	--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건강정책과	1.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입소자계속입소자의 관리 나. 시설의 지도·감독 다. 정신질환자 및 시설종사자변동사항접수·보고 라. 시설의 비용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승인	정신요양시설설치기준 및 운영규칙 제6조제2항, 제3항 같은규칙 제9조제1항 같은규칙 제10조제1항 같은규칙 제8조 별표3의8	구 청 장
	1.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한약업자의약품판매업의 허가·변경허가 나. 허가증의 교부 다. 보고·검사 등 라. 폐기명령 등 2. 의약품 등 검사명령 3. 마약 도·소매업자, 마약관리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허가지정 나. 허가증지정서의 교부 다. 휴·폐업, 사망·무능력·법인해산·신고의 수리 라.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의 발행 마. 사고 마약류 등 처리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분 사. 마약관리자의 지정관련 신고 수리, 관리 아. 출입·검사수거 자. 허가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4. 의료법 제33조의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 (단, 의료법 제3조의 3(종합병원) 및 동법 제48조(설립 허가 등)에 의한 의료법인 병원은 제외함) 가.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허가 나.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다.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교부 5.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	약사법 제45조 같은법 제45조 같은법 제69조 같은법 제71조 같은법 제73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같은법 제7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33조, 제34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44조 의료법 제33조 제4항 같은법 제33조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감염병예방법49조	
여성가족과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원임면보고의 접수 나. 임시이사의 선임 다. 감사의 추천 라.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제22조3 같은법 제18조 같은법 제24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기후환경정책과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연환경보전시설의 설치·운영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2.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같은법 제66조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구 청 장

	3.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의 처리 나. 명예야생생물보호원의 위·해촉 4. <삭제> 5.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과 1-3종 사업장은 제외) 가.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 나.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신고의 수리 다.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라.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수리 마. 측정기기관련 조치·조업정지 등의 명령 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의 개선명령 사. 배출시설의 조업정지, 허가취소, 폐쇄조치 등의 명령 아.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자. 보고 및 검사 등 차. 청문회 실시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타. 개선계획서의 접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내지 제73조 같은법 제61조, 제6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24조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4조, 제36조, 제38조 같은법 제35조, 제37조 같은법 제82조 같은법 제85조 같은법 제94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대기보전과	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1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은 제외) 가. 연료의 공급·판매·사용자에 대한 금지·제한 등의 조치명령 나. 연료의 제조·판매·사용에 대한 금지·제한 등의 조치명령 및 승인 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변경 신고수리 및 필요한 조치명령 등 라. 저황유유의 연료사용 승인 마. 고체연료의 사용금지·제한 등의 명령 및 사용승인 바.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서류·시설·장비 등의 검사 사. 청문회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제42조 같은법 제44조, 제45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같은법 제82조 같은법 제85조 같은법 제94조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대기보전과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단속 나. 과태료 부과·징수 3. 대기관리권역의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특정건설기계,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지도·감독 나.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다.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지도·감독 및 조치명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법 제16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35조	구 청 장
자원순환과	1.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나. 허가 및 변경허가 다. 재위탁의 사전승인 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법 제21조, 제22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25조	

<p>마. 과징금 처분 등</p> <p>바. 권리의무 승계신고</p> <p>사. 휴업·폐업 등의 신고</p> <p>아. 방지폐기물의 예방조치 등</p> <p>자. 청문</p> <p>차. 과태료 부과 징수</p>	<p>같은법 제26조</p> <p>같은법 제31조</p> <p>같은법 제33조</p> <p>같은법 제41조제3항·제45조제6항</p> <p>같은법 제57조</p> <p>같은법 제66조</p>	
<p>2. 배출자 등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다음의 사무</p> <p>가. 설치신고·승인, 변경신고·승인</p> <p>나. 설치완료 및 사용개시 신고</p> <p>다. 개선·사용중지·폐쇄명령</p> <p>라.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장기간 보관 필요요청의 인정</p>	<p>같은법 제27조</p> <p>같은법 제28조</p> <p>같은법 제29조</p>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p>	
<p>3.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과징금 처분</p> <p>나. 보고·검사 등</p> <p>다. 방지폐기물의 처리</p> <p>라. 폐기물 인계서등의 전산처리</p> <p>마. 청문</p> <p>바. 과태료</p> <p>사.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장기간 보관 필요성이 있다고 기간을 정하여 인정</p> <p>아. 휴업, 폐업 등의 신고</p> <p>자.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처리명령</p> <p>차.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명령</p>	<p>폐기물관리법 제28조</p> <p>같은법 제39조</p> <p>같은법 제40조</p> <p>같은법 제45조</p> <p>같은법 제61조</p> <p>같은법 제68조</p> <p>같은법 제28조</p> <p>같은법 제37조</p> <p>같은법 제39조의2</p> <p>같은법 제39조의3</p>	

<p>마. 조치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 접수</p> <p>바. 조치명령 미이행자 등에 대한 조정·정지, 시설 폐쇄 명령 및 과징금 처분</p> <p>사.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p>	<p>같은법 제12조제7항</p> <p>같은법 제14조</p> <p>같은법 제39조</p> <p>같은법 제13조</p> <p>같은법 시행령 제14조</p>	
<p>2. 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할당 부하량 또는 지정 배출량 초과배출자에 대한 총량초과부과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p> <p>나. 부과금의 조정</p>	<p>같은법 제43조</p> <p>같은법시행령 제38조</p>	
<p>3. 다음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p> <p>가. 법 제6조</p> <p>나. 법 제12조제4항·제6항</p>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공원녹지과	<p>1. <삭제></p> <p>2. <삭제></p> <p>3. 산림 병해충 예방·방제 등 조치명령</p> <p>4. <삭제></p> <p>5. 유원지 시설 유지관리의 지도감독</p> <p>6. 일반·경관광장의 관리</p> <p>7.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 다음의 권한 <신설></p> <p>가. 방제조치 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p> <p>나. 방제비용의 지원</p> <p>다. 방제사업의 설계·감리</p> <p>8. 숲길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숲길 연차별 계획수립</p> <p>나.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조사</p> <p>다. 숲길의 조성·운영·관리 등에 관한사항</p>	<p>산림보호법 제24조, 제25조</p> <p>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p> <p>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p> <p>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p> <p>같은법 제8조의2</p> <p>같은법 제8조의3</p> <p>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p> <p>같은법 제22조의3</p> <p>같은법 제23조, 제23조의2</p>	구 청 장
하수관리과	<p>1. 공공하수도공사의 중지·변경·기타 필요한 조치명령</p>	<p>하수도법 제25조제1항</p>	
물 순환 정책과	<p>1.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 및 추가지정</p> <p>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p> <p>다.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역서 및 추가지정서 통보</p> <p>라. 할당 부하량 또는 배출량 지정 내역서 및 추가지정서 통보</p>	<p>영산강·설천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2조</p> <p>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p> <p>같은법 제12조제3항</p> <p>같은법 제2조</p> <p>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p> <p>같은법 제12조제5항</p> <p>같은법 제12조제6항</p>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물 순환 정책과	<p>4.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하천의 보수를 위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 (하천 부속시설 및 친수공간 등 부대시설 포함)</p> <p>나. 하천점용료, 채취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p> <p>다. 점용료 등의 감면</p> <p>라. 하천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및 기타 납부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p> <p>마. 하천에서의 양양취사수영 또는 낚시금지 구역 지정 및 단속</p> <p>바. 하천관리원(감시원)의 임명 및 복무관리</p> <p>5.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함)</p> <p>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p> <p>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 사실시계획 인가</p> <p>다.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준공인가</p> <p>라. 토지점용 등의 허가</p> <p>마. 토석·모래·자갈 기타 산출물의 채취 허가</p> <p>바.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허가</p> <p>사. 식물재식 및 선박운항의 허가</p> <p>아. 허가 등의 고시</p> <p>자.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의 대행</p> <p>차. 홍수관리 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p> <p>카. 허가·승인의 취소·변경·효력정지, 공사 및 기타 행위의 중지 명령, 공작물등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명령</p> <p>타.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p> <p>파. 보고서의 징구 및 출입·검사</p> <p>하. 타인토지의 사용 및 출입 등의 허가</p> <p>거. 원상회복 면제허가</p> <p>너. <삭 제></p> <p>더. 허가기간의 조정허가</p>	<p>하천법 제28조</p> <p>같은법 제37조</p> <p>같은법 제37조</p> <p>같은법 제67조</p> <p>같은법 제46조</p> <p>같은법 제72조</p> <p>같은법 제5조</p> <p>같은법 제30조</p> <p>같은법 제30조</p> <p>같은법 제33조</p> <p>같은법 제33조</p> <p>같은법 제33조</p> <p>같은법 제33조</p> <p>같은법 제36조</p> <p>같은법 제38조</p> <p>같은법 제69조</p> <p>같은법 제70조</p> <p>같은법 제90조</p> <p>같은법 제75조</p> <p>같은법 제48조</p> <p>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p>	구 청 장
주택정책과	<p>1. 600세대미만의 주택건설사업 계획 또는 대지 조성 사업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다만, 국가 및 광주광역시(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p>	<p>주택법 제15조</p>	

	<p>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p> <p>가. 사업계획의 승인</p> <p>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600세대 이상 승인된 사업계획을 600세대 미만으로의 변경승인을 포함한다)</p> <p>다.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600세대 이상 승인된 사업계획을 포함한다)</p>	<p>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p> <p>주택법 제16조</p>	
--	---	--------------------------------------	--

	<p>해관제인 통지, 자동차등록증변호관 봉인의 영차폐지, 수출이행여부신고의 처리</p> <p>아. 압류등록</p> <p>자.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p> <p>차. 임시운행의 허가, 임시운행허가증허가번호의 교부회수</p> <p>카.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p> <p>타. 자동차 정기점검의 연장허가</p> <p>3.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위임된 권한에 한함)</p> <p>4. 과징금부과 및 징수</p> <p>5. 청문(위임된 권한에 한함)</p> <p>6. 과태료 부과 및 징수(택시미터 사용집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에 대한 사항 포함)</p> <p>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신고의 수리</p> <p>나. 휴지·폐지 신고의 수리 및 자동차의 사용정지</p> <p>다. 사고의 보고</p> <p>라. 대여약관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p> <p>마. 대여사업의 관리위탁허가</p> <p>바. 대여사업의 개선명령</p> <p>사. 유상운송의 금지</p> <p>아. 청문(등록 등의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의 실시</p> <p>자.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p> <p>차. 과태료의 부과·징수</p> <p>카. 대여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p> <p>8.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p> <p>나. 운송시설확인 및 운송개시 등</p> <p>다. 운임 및 요금신고의 수리</p> <p>라. 사업계획변경인가</p> <p>마.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의 수리</p> <p>바. 상속신고의 수리</p>	<p>같은법 제14조</p> <p>같은법 제16조</p> <p>같은법 제27조</p> <p>같은법 제28조</p> <p>같은법시행규칙제60조</p> <p>자동차관리법제73조</p> <p>같은법 제74조</p> <p>같은법 제75조</p> <p>같은법 제84조</p> <p>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p> <p>같은법 제16조, 제89조</p> <p>같은법 제19조</p> <p>같은법 제31조</p> <p>같은법 제32조</p> <p>같은법 제33조</p> <p>같은법 제34조</p> <p>같은법 제86조</p> <p>같은법 제85조, 제88조</p> <p>같은법 제94조</p> <p>같은법 제28조, 제35조</p> <p>동법시행령 제60조, 제65조</p> <p>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p> <p>같은법 제7조</p> <p>같은법 제8조</p> <p>같은법 제10조</p> <p>같은법 제14조</p> <p>같은법 제15조</p>	
--	---	--	--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주택정책과	<p>2.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착수 신고 및 착수기간의 연장에 관한 권한</p> <p>3. 감리자 지정, 주택건설 감리원의 배치 계획 및 변경 계획과 감리업무 보고 (감리자의 평가업무 포함),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 등에 관한 권한</p> <p>4.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p> <p>5. <삭 제></p>	<p>주택법 제43조, 44조, 45조, 47조, 48조</p> <p>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p> <p>주택법 제3조 및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0조</p>	구 청 장
교통정책과	<p>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삭 제></p> <p>나. <삭 제></p> <p>다. <삭 제></p> <p>라. <삭 제></p> <p>마. 터미널 사용약관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p> <p>바. 터미널시설사용료 인가 및 변경인가</p> <p>사. <삭 제></p> <p>아. <삭 제></p> <p>자. <삭 제></p> <p>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명령</p> <p>카. 과징금의 부과·징수</p> <p>타. 과태료의 부과·징수</p> <p>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신고</p> <p>나.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 허가</p> <p>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p> <p>라.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p> <p>마.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p> <p>바. 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보고와 검사</p>	<p>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같은법 제40조</p> <p>같은법 제41조제1항</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같은법 제45조제1항</p> <p>같은법 제88조</p> <p>같은법 제94조</p> <p>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p> <p>같은법 제56조</p> <p>같은법 제56조</p> <p>같은법 제56조</p> <p>같은법 제56조의 2</p> <p>같은법 제61조</p>	
대중교통과	<p>1. 자동차의 사용정지 명령</p> <p>2.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멸실된 등록원부의 회복조치, 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 훼손 기타 부정행위 유출 등 방지와 보존, 등록원부의 등·초본의 교부 및 열람</p> <p>나. 신규등록 및 등록종의 교부·재교부</p> <p>다. 신규등록의 거부</p>	<p>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9조</p> <p>자동차관리법 제7조</p> <p>같은법 제8조</p> <p>같은법 제9조</p>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대중교통과	<p>사. 사업의 휴지와 폐지신고의 수리</p> <p>아. 사업개선명령</p> <p>자. 운송사업에 대한 보고·검사 등</p> <p>차. 등록취소 등</p> <p>카. 청문</p> <p>타. <삭 제></p> <p>파. 과태료의 부과·징수</p> <p>9.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p> <p>나. 운송시설 확인 및 운송개시 등</p> <p>다. 운송약관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p> <p>라. 사업계획의 변경등록</p> <p>마. 사업관리의 위탁신고 수리</p> <p>바.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의 수리</p> <p>사. 상속신고의 수리</p> <p>아. 사업의 휴지·폐지 신고의 수리</p> <p>자. 중대한 교통사고의 보고</p> <p>차. 사업개선명령</p> <p>카. 운송사업에 대한 보고·검사 등</p> <p>타. 등록취소 등</p> <p>파. 청문</p>	<p>같은법 제16조</p> <p>같은법 제23조</p> <p>같은법 제79조</p> <p>같은법 제85조</p> <p>같은법 제86조</p> <p><삭 제></p> <p>같은법 제94조</p> <p>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p> <p>같은법 제7조</p> <p>같은법 제9조</p> <p>같은법 제10조</p> <p>같은법 제13조</p> <p>같은법 제14조</p> <p>같은법 제15조</p> <p>같은법 제16조</p> <p>같은법 제19조</p> <p>같은법 제23조</p> <p>같은법 제79조</p> <p>같은법 제85조</p> <p>같은법 제86조</p> <p><삭 제></p> <p>같은법 제94조</p>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대중교통과	<p>라. 자동차번호판의 부착·봉인, 번호판 봉인을 떼는 허가 및 회수폐기</p> <p>마. 변경등록</p> <p>바. 이전등록</p> <p>사. 말소등록,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와 이</p>	<p>같은법 제10조</p> <p>같은법 제11조</p> <p>같은법 제12조</p> <p>같은법 제13조</p>	구 청 장

	하. <삭 제> 거. 과태료의 부과징수		
건설행정과	1.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나. 등록 말소 다.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말소 라. 해당권의 설정·변경·말소등록 2. 건설기계 폐기요청·처분등 조치명령 및 강제처리 3.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증 교부 나. 정기검사 최고 다. 수시검사 명령 라.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마. 검사의 연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같은법 제6조 같은법 제8조의2 자동차등특강동산차량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제34조의 2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3. 사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도의 개설·개축·증축·변경의 허가 나. 사용료징수허가 및 통행제한금지에 관한 허가 4. 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유지·관리		
노동협력관	1. 노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립신고의 수리 나. 변경사항신고의 수리 다. 임시총회 등의 소집요구에 대한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및 지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8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도 로 과	1. 도로의 계획 폭이 20m 미만인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로공사의 시행 및 유지·관리 나. 위수탁 도로공사의 협약체결 및 시행 다. 도로의 사용·폐지의 공고 및 열람 라.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마.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바.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사. 부대공사의 시행 아. 공공단체 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자. 비관리청의 공사시행(시장 시행공사 제외) 차. 도로편입토지의 보상·수용·이전등기 등 전반사항 카. 사유 행정재산(도로) 용도의 폐지 2. 관할구역안의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육교와 지하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 나. 콘크리트 포장도사리도 및 도시고속도로 부채도로의 유지·관리 다. 보도 및 지하상가(시장관리 상가 제외)의 유지·관리 라. 가로등의 유지·관리(종합건설본부장 수입사항 제외) 마.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종합건설본부장 수입사항 제외) 바. 분수대·시계탑 등 도로점용 조형물의 유지·관리(인수시설 포함) 사. 보·차도의 적치물 및 교통장애물의 정비·관리 아. 재해 및 계절대책(종합건설본부장 수입사항 제외) 자. 도로점용의 허가 및 관리·단속 차. 굴착복구 등 도로점용공사의 원상회복(종합건설본부장 수입사항 제외) 카. 접도구역의 관리 타. 사유 행정재산(도로)의 사용·수익허가 및 취소	도로법 제31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36조 같은법 제4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도로법 제31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4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5조 사도법 제4조 같은법 제9조, 제10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노동협력관	라. 위법한 규약의결·처분의 시정명령 마. 자료의 제출요구 바. 해산신고의 수리 사. 단체협약신고의 수리 및 위법사항의 시정명령 아. 단체협약의 지역적 확장 적용결정 및 공고 자. 불법행위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차. 직장폐쇄신고의 수리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타. 쟁의행위의 신고수리 파. 폭력행위 등 신고의 수리	같은법 제21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6조 같은법 제42조 같은법 제46조 같은법 제96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같은법시행령 제18조	구 청 장
관광진흥과	1. 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희음식점·외국인 전용유희음식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정 및 지정증 교부 나. 관광사업 양수신고 및 휴업·폐업 통보의 수리 다. 지정취소, 사업정지 및 시설·운영 개선명령 라. 과징금의 부과·징수 마. 청문의 실시 바. 과태료의 부과·징수 2. 관광사업에 대한 보고서류 제출 명령 및 감사	관광진흥법 제6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86조 같은법 제78조	
투자유치과	1. 지방 산업단지 일반관리업무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민생경제과	1. 대부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변경등록, 영업 폐지의 신고 수리 나. 대부업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다.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요청 라. 제 나목 및 제 다목의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마. 영업정지 및 등록의 취소 바. 등록의 취소를 위한 청문 사. 2인 이상의 사도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있는 대부업장에 대한 등록 취소시 다른 영업소 관할 사·도지사에게 등록취소 사실 통보 아. 등록 수수료 및 검사 수수료 징수 자.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7조 같은법 제21조	

[별표 3] <개정 2010.10.1., 2013.11.1., 2014.9.1., 2015.3.1., 2015.7.23., 2018.4.1., 2018.10.15., 2020.4.1., 2020.12.28., 2021.-.->

직속기관·사업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생명농업과	1. 농촌정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농어촌정비법 제17조제2호의 시설) 나. 농촌정비사업의 보고 및 검사 2.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그 결과 조치 나.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한 서류의 허가 다.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3.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증의 교부 4. 사료검사신청서의 접수 5. <삭제> 6.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관한 허가신고등록 및 그 변경사항의 보고	농어촌정비법 제24조 같은법 제119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같은법 제61조, 제63조 같은법 제62조 같은법 제123조 축산물 제12조 사료관리법 제21조 <삭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58조	구 청 장
에너지산업과	1.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검사 나.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2. 안전 인종대상 전기용품의 개선·과기수거명령 등 3.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에너지 다소비업자의 신고 등 나. 시공업 등록말소정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요청 시) 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라. 검사대상기기 검사 불합격품에 대한 조치 마.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해임·퇴직신고의 수리 바. 보고 및 검사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4. 계량기 증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등록변경신고의 수리 나.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 다.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5. 계량기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검사의 검사면제 나. 정기검사의 증인표시 다. 보고 및 검사 등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같은법 제20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8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같은법 제38조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66조 같은법 제78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49조 및 제50조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인사정책과	1. 6급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2. 임기제공무원 임용권(개방형직위 제외) 3.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제자유구역 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6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4급이상 직속기관 사업소장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장
총 무 과	1. 소속공무원의 연가계획 수립 2. 재해부조·사망조의금의 급여사유 확인 및 급여결정 3. 예술단원에 대한 재해부조·사망조의금의 급여사유 확인 및 급여결정	공무원복무조례 제19조 공무원연금법 제26조 같은법 제26조 공무원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 통 상수도·소방본부장 문화예술회 관 장
기후환경정책과	1. 토양오염실태조사·정밀조사 실시 및 결과제출 2. 타인의 토지 출입 및 지장물 등의 변경 또는 제거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같은법 제8조	보건환경연구원장
공원·녹지과	1. 사업소장이 시행하는 공원조성공사 편입토지의 보상·수용·이전등기 등 전반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푸른도시사업소장 및 미술관장
물 순환정책과	1. 하천개수 및 정비에 관한 실시계획 공시시행	하천법 제27조	종합건설본부장
도로과	1. 도로계획폭 20m이상 도로(광장포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로공사(시장시행공사 제외)의 시행 및 유지관리 나. 위·수탁사업(도시계획상 광로급 제외) 협약 체결·시행 다.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부속물 : 중앙분리대, 공동구, 낙석방지, 방음시설,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과 교량, 고가도로, 지하차도, 터널 및 지하차도터널 내 조명등) 라. 계해 및 시장 지정구간의 제설 대책 마. 도시고속도로 본선구간의 유지관리 및 모든 부속물의 설치 바. 도로 유지관리 관련 시장을 상대로 하는 소송 업무 사. 도로표지관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법 제23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23조	종합건설본부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에너지산업과	라. 개선명령 마. 정밀도·실량합량 등의 표시명령, 사용 중지 명령, 표시정정등의 처분고지 및 처분 6. 계량기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7. 비 법정단위 표시계량기 제작 또는 수입 내용 관련 서류의 접수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52조 같은법 제76조 같은법 제6조	구 청 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도로과	아. 비관리청의 공사시행에 따른 관리 감독 자. 차량운행의 제한(과적차량 단속) 차. 도로권입토지의 보상·수용·이전등기 등 전반사항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48조	종합건설본부장
방호·방과	1. 탱크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마. 과징금 처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35조	소방시장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13일
광주광역시장

1. 개정이유

- 기존 위임 사무와 유사한 사무에 대한 관할기관을 통일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사항에 대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추가(별표)

- 기존 재위임된 사무와 유사한 사무(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 등 과징금 부과 징수,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제한)에 대한 추가 재위임[자원순환과]

라. 조항표기 수정(별표)

-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 표기 현행화[자원순환과]
- 「전기안전관리법」, 「계량에 관한 법률」, 「광업법」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 표기 현행화[에너지산업과]

3.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2일까지** 광주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kmr0920@korea.kr
- 팩스(fax): 062-613-2329
- 일반우편: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

4. 기타사항

- 기타 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062-613-23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을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입법예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광주광역시 규칙 제 호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1.10.15, 2012.7.15, 2012.11.15, 2013.10.15, 2014.6.15, 2014.9.1, 2015.3.1, 2016.7.1, 2016.11.1, 2018.4.1, 2018.10.15, 2019.4.15, 2020.4.1, 2020.12.28, 2021.5.3, 2021.-.->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자치행정과	1. 구단위이하의 주민등록전산정보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조제2항	구청장
회계과	1. 은닉 국유재산의 조사 및 환수	국유재산법 제77조	
평화기반조성과	1.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나. 지역사회관련 각종 정보·자료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편입 지원 다.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거주지에서 자립·정착에 관한 사항 (의료·생활보장, 직업훈련·취업알선, 주택교관, 학력확인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발급, 결연·후원추진, 무연고 사망자처리) 마.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42조외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제49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여성가족과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관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5조, 12조제1항, 시행령 제4조	
출산보육과	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철거 명령 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마. 검사 및 질문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아동복지법 제15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 제3항 같은법 제22조제2항 같은법 제22조제3항 같은법 제23조제1항 같은법 제23조제2항 같은법 제23조제3항 같은법 제31조제1항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출산보육과	아. 제출 기한의 연장 자. 조사계획의 통지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2항	구청장
건강정책과	1.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나. 폐지·휴지·재개신고의 수리 다. 개선·사업정지·시설의 장 교체 명령 및 허가취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 제24조 같은법 제25조	

감염병 관리과	1. 물수마약 처분 등에 관한 권한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철거 명령 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마. 검사 및 질문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아. 제출 기한의 연장 자. 조사계획의 통지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같은법 제22조제2항 같은법 제22조제3항 같은법 제23조제1항 같은법 제23조제2항 같은법 제23조제3항 같은법 제31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	---	--

식품안전과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철거 명령 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마. 검사 및 질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같은법 제22조제2항 같은법 제22조제3항 같은법 제23조제1항 같은법 제23조제2항	
--------------	--	---	--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식품안전과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아. 제출 기한의 연장 자. 조사계획의 통지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	같은법 제23조제3항 같은법 제31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구청장

기후환경 정책과	1. 수질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과 1-3종 사업장은 제외) 가.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변경허가 및 신고수리포함) 수리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다.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라. 수질오염물질의 회색처리에 대한 인정 마. 허가의 취소, 조업정지·폐쇄명령 바.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의 수리 사. 기타 수질오염원의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아.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자. 조업정지, 허가의 취소, 위법시설의 폐쇄명령 차.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카. 보고 및 검사 등, 오염도검사의뢰 타. 청문의 실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같은법 제42조, 제35조제3항 같은법 제60조 제1항 같은법 제60조 제5항 내지 제6항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40조, 제42조, 제44조 같은법 제41조, 제43조 같은법 제68조 같은법 제72조 같은법 제82조	
---------------------	--	--	--

	파. 과태료의 부과징수 2. 시 관할사업장 이외의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과징금의 부과·징수 나. 불법배출시설물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철거의 대집행, 표지판의 설치 다. 사업장의 출입·검사 라. 자료의 제출 3.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7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	---	--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기후환경 정책과	4. 환경책임보험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과 1-3종 사업장은 제외)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나. 영업정지 명령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같은법 제43조제1항 같은법 제49조	구청장

대기보전과	1.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 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수검명령 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라.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마.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및 지정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3항 같은법 제62조 제4항 시행규칙 제86조의 6 같은법 제62조의3 같은법 제62조의4	
--------------	--	--	--

자원순환 과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과 대기 또는 수질분야의 특정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은 제외) 가.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나. 과징금의 부과·징수 다.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 명령 마.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바.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합유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 다.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라. 조치명령 마.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바.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16조 같은법 제17조 같은법 제19조 같은법 제19조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제37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24조 같은법 제25조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제37조	
-------------------	--	--	--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자원순환 과	3.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 나.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의 지급 4.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같은법 제15조의 4	구청장

<p>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로 시장이 위임받은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 및 이를 수집 운반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가. 폐기물처리계획서·폐기물분석결과서·수탁확인서의 확인·변경 확인, 폐기물인계서의 접수</p> <p>나. 보고서의 제출명령</p> <p>다. 보고명령 및 검사</p> <p>라. 폐기물처리에 따른 조치명령</p> <p>마. 대집행 및 비용징수</p> <p>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p> <p>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다음 권한</p> <p>가. 설치승인·변경승인 및 설치신고·변경신고</p> <p>나.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p> <p>다. 권리의무승계의 신고수리</p> <p>6.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p> <p>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사무(사용종료·폐쇄신고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지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등의 징수·예치·사건적립 등)</p> <p>다. 과태료의 부과징수</p> <p>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제한</p> <p>7.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p> <p>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p>	<p>폐기물관리법 제17조</p> <p>같은법 제38조</p> <p>같은법 제39조</p> <p>같은법 제48조</p> <p>같은법 제49조</p> <p>같은법 제48조의5</p> <p>같은법 제29조제2항, 제3항</p> <p>같은법 제32조제3항</p> <p>같은법 제33조</p> <p>같은법 제31조</p> <p>같은법 제50조 내지 52조</p> <p>같은법 제68조</p> <p>같은법 제54조</p>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p> <p>같은법 제39조</p>
---	---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공원녹지과	<p>1.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p> <p>2. <삭제></p> <p>3. 조립비 및 산림관리기반시설비의 반환조치</p> <p>4. 입업후계자 또는 독립가의 선발·선정·지원·취소</p> <p>5.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사방지의 지정·협의 및 고시</p> <p>나. 사방사업의 시행<신설></p> <p>다. 삭제</p> <p>라. 사방지의 지정해제 및 해제고시</p> <p>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p>	<p>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p> <p>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p> <p>입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p> <p>사방사업법 제4조</p> <p>같은법 제5조, 제7조의2</p> <p>같은법 제20조</p> <p>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p> <p>같은법 제22조제2항</p> <p>같은법 제22조제3항</p> <p>같은법 제23조제1항</p> <p>같은법 제23조제2항</p>	구청장

<p>가. 철거 명령</p> <p>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p> <p>다. 사용증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p> <p>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p> <p>마. 검사 및 질문</p> <p>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p> <p>사. 과태료의 부과·징수</p> <p>아. 제출 기한의 연장</p> <p>자. 조사계획의 통지</p> <p>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p>	<p>같은법 제23조제3항</p> <p>같은법 제31조제1항</p> <p>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2항</p> <p>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p> <p>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2항</p>
<p>물 순환 정책과</p> <p>1. 하천·구거·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p>	<p>국유재산법</p> <p>국유재산법 제25조</p> <p>국유재산법 제12조</p>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물 순환 정책과	<p>나. 기부채납</p> <p>다.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p> <p>라. 관리청 지정을 위한 업무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p> <p>마. 행정재산의 관리위탁</p> <p>바. 관리전환의 협의</p> <p>사. 국유재산의 사용승인</p> <p>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갱신허가</p> <p>자. 행정재산의 용도폐지</p> <p>차. 일반재산의 관리·처분</p> <p>카. 일반재산의 대부 및 갱신</p> <p>타. 국유재산의 멸실 등의 보고</p> <p>파.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p> <p>2. 국가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하천의 점용 등 허가로 인하여 발생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및 상속 등의 신고수리(시장 허가 사항에 한함)</p> <p>나. 토지 점용허가 및 이의 고시</p> <p>다. 토석·모래·자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및 이의 고시</p> <p>라. 스케이트장, 유선장의 설치허가 및 이의 고시</p> <p>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의 재식허가 및 이의 고시</p> <p>바. 선박의 운항허가 및 이의 고시</p> <p>사. 하천점용 등에 관한 공사의 대행 및 기간의 통지</p> <p>아. 타인토지예의 출입 및 그 사용 등을 위한 처분(시장 허가 사항에 한함)</p> <p>자. 원상회복명령 또는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및 부속공작물의 국유화 조치(시장 허가 사항에 한함)</p> <p>차. 축목의 재식과 공작물의 신·개축 허가</p>	<p>같은법 제13조</p> <p>같은법 제14조</p> <p>같은법 제24조</p> <p>같은법 제29조</p> <p>같은법 제16조</p> <p>같은법 제17조</p> <p>같은법 제30조 및 제35조</p> <p>같은법 제40조</p> <p>같은법 제41조 및 제42조</p> <p>같은법 제46조 및 제47조</p> <p>같은법 제70조</p> <p>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p> <p>하천법 제5조</p> <p>같은법 제33조</p> <p>같은법 제33조</p> <p>같은법 제33조</p> <p>같은법 제33조</p> <p>같은법 제36조</p> <p>같은법 제75조</p> <p>같은법 제48조</p> <p>같은법 제38조</p> <p>같은법 제38조</p> <p>같은법 제69조</p> <p>같은법 제70조</p> <p>같은법 제90조</p>	구청장

	<p>카.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형상변경허가</p> <p>타.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시장에게 허가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p> <p>파.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 (시장에게 허가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p> <p>하. 보고의 수리 및 출입·검사</p>	
--	--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하수관리과	1.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하수도법 제25조제2항	구청장
주택정책과	<p>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에서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p> <p>가. 철거 명령</p> <p>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p> <p>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p> <p>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p> <p>마. 검사 및 질문</p> <p>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p> <p>사. 과태료의 부과·징수</p> <p>아. 제출 기한의 연장</p> <p>자. 조사계획의 통지</p> <p>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p>	<p>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p> <p>같은법 제16조제3항</p> <p>같은법 제22조제2항</p> <p>같은법 제22조제3항</p> <p>같은법 제23조제1항</p> <p>같은법 제23조제2항</p> <p>같은법 제23조제3항</p> <p>같은법 제31조제1항</p> <p>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2항</p> <p>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p> <p>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2항</p>	
교통정책과	<p>1. 국제물류추진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 및 상속신고의 수리</p> <p>나. 사업의 휴지·폐지신고의 수리</p> <p>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다음 사무</p> <p>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p> <p>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p> <p>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운송사업 및 운송추진사업)</p> <p>라. 책임보험계약등의 미체결 보충등의 의무가입자에 대한 통지(운송사업 및 운송추진사업)</p> <p>마. 운송가맹점 가입사업자의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서의 상호변경 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추진사업)</p> <p>바. 개선명령(운송사업 및 운송추진사업)</p> <p>사.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운송사업 및 운송추진사업)</p> <p>아. 사업의 상속신고(운송사업 및 운송추진사업)</p> <p>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사업정지 처분</p> <p>및 감차조치 명령</p>	<p>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p> <p>같은법 제46조</p> <p>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p> <p>같은법 제3조제3항</p> <p>같은법 제3조제7항,제21조제5항</p> <p>같은법 제8조의5제2항,제24조</p> <p>같은법 제10조제9항,제24조</p> <p>같은법 제12조, 제24조</p> <p>같은법 제14조, 제24조</p> <p>같은법 제15조, 제24조</p> <p>같은법 제17조제1항</p> <p>같은법 제18조</p>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교통정책과	<p>차.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p> <p>카. 과징금 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시행 (운송사업 및 운송추진사업)</p> <p>타. 청문(운송사업 및 운송추진사업)</p>	<p>같은법 제19조, 제24조</p> <p>같은법 제20조, 제24조</p> <p>같은법 제20조의2제1항</p> <p>같은법 제20조의2제3항</p>	구청장

	<p>파.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p> <p>하. 화물운송종사자격자에 대한 청문</p> <p>거. 화물자동차운송추진사업의 허가</p> <p>너. 화물자동차운송추진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p> <p>디. 사업자로부터의 업무·재산 등에 관한 보고·경영실태조사 및 재무관리상태 진단(운송사업 및 운송추진사업)</p> <p>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운송사업 및 운송추진사업)</p> <p>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추진사업) 휴·폐업신고</p>	<p>같은법 제21조제1항</p> <p>같은법 제23조의2</p> <p>같은법 제32조</p> <p>같은법 제50조</p> <p>같은법 제18조, 제28조</p> <p>동법규칙 제26조, 제40조</p>	
대중교통과	<p>1.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가. 운송시설확인, 운송개시기일언기·개시기간연장 신청의 수리</p> <p>나. 운송사업에 대한 보고·검사 등</p> <p>다. <삭제></p> <p>라. 과태료의 부과·징수</p> <p>마. 시내버스 정류소 조정 및 조사·확인</p> <p>2.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가. 사업계획의 변경</p> <p>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p> <p>다. 개인택시 대리운전신고의 수리</p> <p>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신고수리</p> <p>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지·폐지허가</p> <p>바. 운송시설확인, 운송개시기일언기·개시기간연장신청의 수리</p> <p>사.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검사 등</p> <p>아. 차량연장신고의 수리</p> <p>자. 법규위반 운송사업자 및 운송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단, 면허·등록·허가취소·감차 등을 수반하는 처분은 제외한다)</p>	<p>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p> <p><삭제></p> <p>같은법 제94조</p> <p>같은법 제75조제2항</p> <p>같은법 제10조</p> <p>같은법 제14조</p> <p>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p> <p>같은법 제15조</p> <p>같은법 제16조</p> <p>같은법 제7조</p> <p>같은법 제79조</p> <p>같은법 제84조</p> <p>같은법 제88조</p> <p>같은법 제85조, 제88조, 제94조</p> <p>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 제18조 및 제23조3항</p>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건설행정과	<p>1. 건설기계의 검사</p> <p>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건설업 등록신청의 접수·내용확인·수리 및 건설업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p> <p>나.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내용확인·수리</p> <p>다.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내용확인·수리</p> <p>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제교부</p> <p>마.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p> <p>바.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 말소</p> <p>사. 시정명령·지시</p> <p>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p> <p>자.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차.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p> <p>카. 청문</p> <p>타. 과태료의 부과·징수</p>	<p>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p> <p>건설산업기본법 제9조</p> <p>같은법 제9조의 2</p> <p>같은법 제17조</p> <p>같은법 제9조의 2</p> <p>같은법 제11조</p> <p>같은법 제20조의 2</p> <p>같은법 제81조</p> <p>같은법 제82조</p> <p>같은법 제83조</p> <p>같은법 제85조의 3</p> <p>같은법 제86조</p> <p>같은법 제101조</p> <p>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p> <p>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1</p>	구청장

	파.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하. 건설업 등록대장의 작성·보관	
도로과	1.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국유재산법 외의 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 국토해양부 소관의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나. 기부채납 다.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 라. 관리청 지정을 위한 업무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 마.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바. 관리전환의 협의 사.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갱신허가 자.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차.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국유재산법 제25조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제24조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7조 같은법 제30조 및 제35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41조 및 제42조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도로과	가. 일반재산의 대부 및 갱신 다. 국유재산의 멸실 등의 보고 파.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2.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3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철거 명령 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마. 검사 및 질문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아. 제출 기한의 연장 자. 조사계획의 통지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	같은법 제46조 및 제47조 같은법 제70조 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같은법 제16조제3항 같은법 제22조제2항 같은법 제22조제3항 같은법 제23조제1항 같은법 제23조제2항 같은법 제23조제3항 같은법 제3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2항	구청장
문화기반조성과	1. 전통사찰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전통사찰에 관한 다음 각호사항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다만, 가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같은법 제9조제2항	
문화산업과	1. 도서정가표시·판매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2. 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가. 법 제28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과태료 나.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다.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된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8조 출판산업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민생경제과	1. 가격표시 의무자 지정 2. 물가안정에 관한 사업자의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자료의 제출 명령 및 사업소·사업장에서 장부·서류·기타 물건의 검사 3. 과태료의 부과·징수 4. 국내유통중인 수입물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원산지표시 검사 나. 원산지표시 위반자의 과태료부과·징수 및 이의제기의 수리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 가. 철거 명령 나.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다.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라.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마. 검사 및 질문 바.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아. 제출 기한의 연장 자. 조사계획의 통지 차.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 6.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7. 부정행위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나.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다. 의견청취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8. <삭제>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같은법 제16조제1항 같은법 제26조 대외무역법 제23조제4항 같은법 제60조제2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제3항 같은법 제22조제2항 같은법 제22조제3항 같은법 제23조제1항 같은법 제23조제2항 같은법 제23조제3항 같은법 제3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2항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20조 <삭제>	구청장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생명농업과	1. 농림수산물부 소관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재산의 관리 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등기·등록 및 기타 필요한 조치 라. 행정재산등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조치 마. 일반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바. 국유재산대장·등기부등본·도면의 비치,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서류의 열람·복사·등초본의 교부청구 사. 변상금의 징수 아. 과·오납금 등의 반환 자.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 2. 구청장이 관리하는 국유 농업기반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수익의 허가 나. 사용료의 징수 다. 사용료의 면제 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 제12조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66조 같은법 제72조 같은법 제75조 같은법 제74조 국유재산법 제30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36조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9조제1항제2호	구청장

<p>마.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철회</p> <p>3. 종전의 농경지조성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타인소유지의 개간 후 분배 나. 허가의 양도 다. 개간준공허가 라. 허가의 취소</p> <p>4. 불법농지 등의 조사·전용협의 및 허가농지의 사후 관리</p> <p>5. 개발농지의 변경승인</p> <p>6.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의 고시·통지·변경 및 폐지승인</p> <p>7. 10만㎡ 미만의 소규모 개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정지조사 실시 나. 기본조사실시 및 기본계획실시 다. 세부설계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라. 사업시행의 인가·고시·통지·변경 및 폐지승인 마. 재산의 관리 및 처분승인</p> <p>8. 예매·교환·대여양곡의 체납처분</p>	<p>농지법 제39조 농지법 제40조 농어촌정비법 제9조</p> <p>농어촌정비법 제7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14조</p> <p>양곡관리법 제8조</p>
---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에너지산업과	<p>1.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나.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보고 및 검사 등</p> <p>2.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p> <p>3. 채광사업의 재개신고의 수리</p> <p>4. 조광권자의 사업휴지인가 및 재개 신고의 수리</p> <p>5.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p> <p>6. 발전사업 용량이 3,000KW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법제7조 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나.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의 지정·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다. 법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라. 법 제 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마.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 바. 법 제61조3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사. 법 7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 명령</p> <p>7. 계량기수리검정 및 유효기간 만료 전 검정 (전력량계, 오일미터·액화석유가스·가스미터 제외)</p>	<p>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8조 같은법 제11조 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p> <p>광업법 제42조의2 광업법 제42조의2</p> <p>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제78조</p> <p>전기사업법 시행령 62조 제62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62조제1항</p> <p>제62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62조제1항</p> <p>계량에 관한법률 제24조 및 제25조</p>	<p>구청장</p>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86호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13일
광주광역시장

1. 개정이유

- 민간위탁 계약서 공증 의무화로 수탁자에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 발생

2. 주요내용

- 공증의무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2일까지** 광주광역시(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kmr0920@korea.kr
 - 팩스(fax): 062-613-2329
 - 일반우편: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

4. 기타사항

- 기타 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062-613-23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을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입법예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서를 공증받아야 한다.”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계약체결) ① 시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서를 공중받아야 한다.	제19조(계약체결) ① 시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9. 생략	1.-9. (현행과 같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kmr0920@korea.kr - 팩스(fax): 062-613-2329
- 일반우편: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062-613-23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 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입법예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규칙 제 호

광주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87호

광주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13일
광주광역시장

1. 개정이유

-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21. 5월) 등 조직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칙(별표) 상 소관부서, 사무, 전결권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신설(별표3, 별표4)

- 1) 상수도사업본부: 민원시책개발 수립 및 민원제도 개선 등 세부사무 29건
- 2) 감사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에 관한 사항 등 세부사무 7건
- 3) 자치경찰위원회: 종합·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방침 결정 등 세부사무 41건

나.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이관(별표3)

- 1)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세부사무 20건

다. 업무 효율화를 위한 사무 조정(별표1)

- 1) 고령사회정책과: 세부사무명 변경(독거노인 공동거주제→독거노인 관련 업무)
- 2) 도시경관과: 단위사무명 변경(사무→공공디자인 조정)
- 3)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사무 세분화(세부사무 13건→19건)

라.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결권 조정(별표1)

- 1) 고령사회정책과: 경로사업 종합 계획 수립·조정 5건(부시장→실국장)
경로사업 운영 계획 수립·조정 5건(실국장→과장)

3.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2일까지** 광주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광주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3, 별표4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295호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교육대학교) 세부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교육대학교) 부지 내 기숙사 환경개선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와 북구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8. 13.

광주광역시장

○ 세부시설 변경결정 조서

· 토지이용별 세부시설 조서

구분	면적 (㎡)			비율 (%)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합계	163,512.00	163,512.00	-	100.00	100.00	
건축	28,480.37	28,595.22	증) 114.85	17.42	17.49	
도로 및 주차장	44,174.93	43,976.08	감) 198.85	27.02	26.89	
녹지 및 조정	55,094.13	55,178.13	증) 84	33.69	33.75	
체육	35,762.57	35,762.57		21.87	21.87	

· 건축면적 및 연면적 세부시설 조서

번호	건물명	당 초			변 경			증감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층수	연면적	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층수
1	본관	1,062.95	2	2,083.98	1	본관	1,062.95	2	2,083.98
2	교대미술 실업관	1,270.48	2	4,320.14	2	교대미술 실업관	1,270.48	2	4,320.14
3	연수원	631.44	2	1,250.42	3	연수원	631.44	2	1,250.42
4	과학관	692.17	1	2,105.17	4	과학관	692.17	1	2,105.17
5	인문사회 관	827.16	4	3,254.31	5	인문사회 관	827.16	4	3,254.31

6	음악관	936.48	3	2,120.47	6	음악관	936.48	3	2,120.47	
7	교육매체관	902.04	1	2,732.10	7	교육매체관	902.04	1	2,732.10	
8	기숙사	882.36	1	3,564.09	8	기숙사	997.21	1	3,835.89	증 114.85 증 271.80
9	체육관	1,087.40	2	1,537.93	9	체육관	1,087.40	2	1,537.93	
10	학생회관	834.67	1	3,112.50	10	학생회관	834.67	1	3,112.50	
11	도서관	1,546.66	2	5,612.14	11	도서관	1,546.66	2	5,612.14	
12	연진관	614.40	1	1,976.48	12	연진관	614.40	1	1,976.48	
13	다목적강당	1,650.00	1	2,641.30	13	다목적강당	1,650.00	1	2,641.30	
14	대학원동	1,775.68	4	3,428.06	14	대학원동	1,775.68	4	3,428.06	
15	동아리동	343.47	2	790.56	15	동아리동	343.47	2	790.56	
16	창고	312.00	1	312.00	16	창고	312.00	1	312.00	
17	운동장관리실	64.44	1	64.44	17	운동장관리실	64.44	1	64.44	
18	교육정보문화관	1,142.67	1	4,685.10	18	교육정보문화관	1,142.67	1	4,685.10	
19	교사교육센터	1,717.39	1	6,134.08	19	교사교육센터	1,717.39	1	6,134.08	
20	수위실	50.08	1	44.62	20	수위실	50.08	1	44.62	
21	풍향대	87.00	1	209.38	21	풍향대	87.00	1	209.38	
22	차고	88.80	1	88.80	22	차고	88.80	1	88.80	
23	부설초등학교 본관동	1,467.02	1	4,621.08	23	부설초등학교 본관동	1,467.02	1	4,621.08	
24	부설초등학교 교사동	436.50	2	861.75	24	부설초등학교 교사동	436.50	2	861.75	
25	부설초등학교 특별교실	575.41	3	1,063.13	25	부설초등학교 특별교실	575.41	3	1,063.13	
26	강당	797.85	1	977.82	26	강당	797.85	1	977.82	
27	기숙사	806.86	1	6,186.62	27	기숙사	806.86	1	6,186.62	
28	국제문화예술교육센터	3,046.77	1	7,409.61	28	국제문화예술교육센터	3,046.77	1	7,409.61	
29	부설초등학교 경비실	4.56	1	4.56	29	부설초등학교 경비실	4.56	1	4.56	
30	학생휴게실 (커피숍)	61.20	1	61.20	30	학생휴게실 (커피숍)	61.20	1	61.20	
31	급식실 및 특별교실 동	895.44	2	1,647.46	31	급식실 및 특별교실 동	895.44	2	1,647.46	
32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1,869.02	1	4,621.20	32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1,869.02	1	4,621.20	
합계	-	28,480.37		79,522.50	합계	-	28,595.22		79,794.30	증 114.85 증 271.80

○ 지형도면 : 첨부참조 및 열람장소 비치

광주광역시 도시 제2021-298호

도시관리계획(송정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송정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광산구(공원녹지과)에 일반인 열람용으로 비치합니다.

2021. 8. 9.

광 주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송정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변경	29	송정공원	근린공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산23일원	513,462.4	

2. 공원지정현황

- 공원지정년월일: 1975. 2. 18.(건고-24호)
- 조성계획 결정: 1989. 12. 4.(건고-728호)
- 조성계획 최종: 2021. 2. 8.(광고-48호)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 신청부서: 광산구 복지정책과
- 변경사유
 - 현충탑(1977년 건립) 지하의 위폐봉안소(524위)가 광주공원으로 이전(2007.9.18.) 후 참배와 추모의 기능이 약화되었기에 철거하고자 함.
 - 현충탑의 부속물인 탐비는 보존하고 탐비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조국수호에 힘쓴 순국선열에 대한 뜻을 기리고 예우를 갖추하고자 함

4. 법적 검토사항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설률(법정 40%이하)	12.69%	12.69%	
건폐율(법정 10%이하)	0.96%	0.96%	
설치제한시설률(20%이하)	5.09%	5.09%	

II. 도시계획시설(송정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조성계획 총괄표(변경)

시설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	513,462.40	513,462.40	4,956.46	4,956.46	11,454.99	11,454.99	건폐율 0.96%
시설소계		65,172.00	65,172.00	4,956.46	4,956.46	11,454.99	11,454.99	시설률 12.69%
도로 및 광장	소계	14,732.00	14,852.00	-	-	-	-	
	도로	12,152.00	12,152.00	-	-	-	-	
	광장	2,580.00	2,700.00	-	-	-	-	증 120㎡
조경시설	조경휴식 시설	5,885.00	5,885.00	-	-	-	-	
휴양시설	노인정 의 2	9,700.00	9,700.00	214.72	214.72	534.72	534.72	
유흥시설	-	-	-	-	-	-	-	
운동시설	광도장의 6	22,317.75	22,317.75	3,754.74	3,754.74	7,243.27	7,243.27	
교양시설	도서관 의 5	3,820.00	3,700.00	719.00	719.00	3,309.00	3,309.00	감 120㎡
편의시설	주차장 의 4	8,717.25	8,717.25	268.00	268.00	368.00	368.00	
공원관리시설	안내판 의 3	-	-	-	-	-	-	
녹지	-	448,290.4	448,290.4	-	-	-	-	녹지율 87.31%

시설률 (법정 40%)	(65,172/517,061.4)×100 =12.60% (공원면적의 40%이하)	(65,172/513,462.4)×100 =12.69% (공원면적의 40%이하)	시행규칙 제11조 [별표4]
건폐율 (법정 10%)	(4,956.46 /517,061.4)×100 =0.95% (공원면적의 10% 이내)	(4,956.46 /513,462.4)×100 =0.96% (공원면적의 10% 이내)	도시공원지침 4-1-3
설치제한 시설률 (법정 20%)	(26,137.75 / 517,061.4)×100 =5.05% (시설면적 20% 이하)	(26,137.75 / 513,462.4)×100 =5.09% (시설면적 20% 이하)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 설치제한 : 도서관·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의 부지 모두 합한 면적

2. 세부시설결정조서(변경)

시설구분	변경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건축규모(㎡)		구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기정	총	계	-	513,462.4	4,956.46	11,454.99		
	기정	시설소계	계	-	65,172	4,956.46	11,454.99		
도로 및 광장	기정	소	계	-	14,732	-	-		
	변경	소	계	-	14,852	-	-		
	기정	도	로	전 지역	12,152	-	-		
	변경	1	광	장	신촌동 산99-1	2,580	-	-	
기정	-1	◇		신촌동	(2,580)	-	-		

시설구분	변경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건축규모(㎡)		구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변경			산99-1	(2,700)	-	-		중 120㎡
조경 시설	기정 소	계	-		5,885	-	-		
	기정 2	조경 휴식 시설	-		5,885	-	-		
	기정 -1	소	소촌동 산4-1	(5,885)	-	-			
휴양 시설	기정 소	계	-		9,700	214.72	534.72		
	기정 3	노인 정	소촌동 산4	800	160	480	철근		
	기정 5-1	피크닉 장	신촌동 1078-4	8,794	54.72	54.72			
	기정 ①	잔디원지	피크닉장 내	(7,563)	-	-			
	기정 ②	진입광장	신촌동 1078-5	(490)	-	-			
	기정 ④	어린이놀이	소촌동 104-10	(177)	-	-			
	기정 ⑥	관리소 및 화장실	신촌동 1078-4	(82)	(54.72)	(54.72)	조적조		
	기정 ⑦	쉼터	피크닉장 내(2개소)	-	-	-			4.7×4.7
	기정 ⑧	지압보드	소촌동 산8-1	(127)	-	-			폭1m
	기정 ⑨	내부산책로	피크닉장 내	(355)	-	-			폭1.2m
	기정 ⑩	팔각정자	녹지 내	31	-	-			2개소
	기정 14	정자	신촌동 산13-3	75	-	-			한식
	기정 ⑪	등의자	공원 내						42개소
	기정 ⑫	평의자	공원 내						48개소
기정 ⑬	파고라	공원 내						2개소	
기정 소	계	-		22,317.75	3,754.74	7,243.27			
기정 7	종합체육시설	-		7,080.75	3,179.74	6,368.27			
기정 7-1	종합체육시설	신촌동 869-1	(6,960)	3,058.99	6,126.77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조		
기정 7-2	종합체육시설 부속 건물	신촌동 869-1	(120.75)	120.75	241.5		시멘트 벽돌조		
기정 8	강도장	소촌동 산12	8,364	435	735		조적조		
운동 시설	기정 11	테니스장	소촌동 93-2	5,783	140	140			
	기정 -1	소	소촌동 93-2	(4,776)	-	-			
	기정 -2	연습코트	소촌동 94-1	(520)	-	-			
	기정 -3	클럽하우스	소촌동 산21-23	(487)	140	140			1층
	기정 29	쇼울더	신촌동 산 13	-	-	-			1개소
	기정 30	테그프레스	신촌동 산 13	-	-	-			1개소
	기정 31	운동시설물장	신촌동 산95-9	1,090	-	-			
	기정 ⑭	평행봉	공원 내						3개소
	기정 ⑮	철봉	공원 내						7개소
	기정 ⑯	윗몸일으키기	공원 내						9개소
	기정 ⑰	허리돌리기	공원 내						7개소
	기정 ⑱	하늘걸기	공원 내						5개소
	기정 ⑲	파도타기	공원 내						4개소
	기정 ⑳	터닝암	공원 내						7개소
	기정 ㉑	등마사지	공원 내						2개소
	기정 ㉒	앉아당기기	공원 내						1개소
	기정 ㉓	앉아밀기	공원 내						2개소
기정 ㉔	마사지롤	공원 내						1개소	
기정 ㉕	트위스트	공원 내						1개소	
기정 ㉖	등허리지압기	공원 내						1개소	
기정 ㉗	거꾸리	공원 내						3개소	

시설구분	변경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건축규모(㎡)		구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㉘	오금퍼기		공원 내						3개소
기정 ㉙	다리벤치기		공원 내						1개소
기정 ㉚	양팔줄당기기		공원 내						2개소
기정 ㉛	자전거타기		공원 내						1개소
기정 ㉜	달리기운동		공원 내						1개소
기정 ㉝	역기내리기		공원 내						1개소
기정 ㉞	역기올리기		공원 내						1개소

시설구분	변경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건축규모(㎡)		구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소	계	-			3,820	719	3,309		
변경 소	계	-			3,700	719	3,309		
기정 13	도서관	신촌동 99-1	3,360	719	3,309	RC조			
기정 15	현충탑	신촌동 산99-1	120	-	-	철거			감 120㎡
변경 신규	현충탑비	신촌동 산 99-1	-	-	-	석재			이설
기정 16	용아박물관	소촌동 산4	100	-	-	석재			
기정 17	임방울시비	소촌동 산4	60	-	-				
기정 25	6.25 참전용사 기념비	소촌동 산97/ 피크닉장 내	60	-	-				
기정 26	용아박물관	우산동 산111	120	-	-				3개소
기정 소	계	-			8,717.25	268	368		
기정 18	주차장	-	7,527.25	-	-				
기정 -2	소	소촌동 산12	(4,448)	-	-				
기정 -4	소	신촌동 869-1	(3,079.25)	-	-				
기정 21	전망대	소촌동 산10-10	430	100	200				
기정 22	공중변소	-	760	168	168	조적조			
기정 -1	소	신촌동 산99-1	(150)	40	40				
기정 -2	소	우산동 산113	(140)	20	20				
기정 -7	소	신촌동 834-6	(290)	72	72				
기정 -11	소	소촌동 산12-7	(180)	36	36				
기정	음수대	전지역	-	-	-				콘크리트
기정	공중전화	전지역	-	-	-				철재
기정 소	계	-			0	0	0		
기정	개시판	전지역	-	-	-				목재
기정	표식판	전지역	-	-	-				
기정	쓰레기통	전지역	-	-	-				철재
기정 27	용아박물관 안내	우산동 974	-	-	-				
기정 28	종합체육시설 표지판	신촌동 869-1	-	-	-				1개소
기정 32	안내판	공원 내	-	-	-				2개소
신규	현충탑비 안내판	신촌동 산99-1	-	-	-				1개소
녹지	기정 녹지	전지역	448,290.4						

3. 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등급	변경구분	류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기정	총계		3,802	12,152	-				
중로	기정	소계		170	3,400	-				
	기정 1	27	20	170	3,400	통과도로	신촌동 877-1	신촌동 870		
소로	기정	소계		739	2,904	-				
	기정 2	5	8	40	320	소	신촌동 869-1	신촌동 863		
	기정	1		120	600	소	소촌동 산4	신촌동 산99-1		
	기정	2	5	30	150	소	소촌동 산4	소촌동 산4		
	기정	3		11	55	소	소촌동 산4	소촌동 산4		
	기정	3	4	4	332	1,328	소	신촌동 886-3	소촌동 93-27	
	기정	10	3	39	117	소	소촌동 산4-1	소촌동 산4-1		
세로	기정	소계		2,893	5,848					
	기정	11	2	167	334	진입로	소촌동 산7-2	소촌동 산4-1		

기정	1	2	370	740	진입로	신촌동 산28-2	우산동 산118	
기정	2	2	130	260	산책로	신촌동 산28-9	신촌동 산13	
기정	3	2	332	664	산책로	우산동974	신촌동 산31-1	
기정	5	2	380	760	진입로	우산동 999	신촌동 834	
기정	7	2	146	292	산책로	신촌동산95-10	신촌동산10-10	
기정	8	2	230	460	산책로	소촌동산12-15	신촌동산10-10	
기정	15	2.5	122	306	진입로	신촌동 산97-1	신촌동 산95-9	
기정	18	2	171	342	산책로	신촌동 산95-9	신창동 산94-1	
기정	19	2	350	700	진입로	소촌동93-21	신촌동1072-16	
기정	20	2	159	318	진입로	신촌동 844-3	신촌동 834	
기정	21	2	106	212	산책로	신촌동 834	우산동 산108	
기정	22	2	48	96	산책로	우산동 산108	우산동 산111	
기정	23	2	68	136	산책로	신촌동 산31-1	신촌동 산30	
기정	24	2	225	450	진입로	신촌동 산30	신촌동 869-1	
기정	25	2	56	112	산책로	소촌동 산4-1	신촌동 산99-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01호

양림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282(2021. 8. 2.)호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된 양림동2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내용 중 정정사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정정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정비와 남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도면,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4.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613-1773)와 남구청 도시계획과(☎607-392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8. 17.

광 주 광 역 시 장

1.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없음)

가. 정비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구역명 : 양림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 위 치 : 남구 양림동 202-27번지 일원
- 면 적 : 128,997㎡

연번	사업행방식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정비유형	계획용적률	건축률	비고
N10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정	양림동2 주거환경개선	남구 양림동 202-27번지 일원	128,997	수복	190%	60%	

2.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양림동2 주거환경개선사업(변경없음)

나. 정비구역 결정

■ 정비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양림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남구 양림동 202-27번지 일원	128,997	-	128,997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당 초	변 경	변경후		
계	128,997	-	128,997	100.0	
주 택 용 지	소 계	97,065	증)2,630	99,695	77.3
	도 로	31,932	감)2,630	29,302	22.7
	주 차 장	19,466	감)2,630	16,836	13.1
	공 공 용 지	5,187	-	5,187	4.0
	공 공 용 지	5,646	-	5,646	4.4
	공 공 용 지	290	-	290	0.2
공공이용 시설	1,343	-	1,343	1.0	

다. 도시계획사항의 결정 및 변경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없음)

■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_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당 초	변 경	변경후	
제1종일반주거지역	47,019	-	47,019	
제2종일반주거지역	81,978	-	81,978	

■ 용도지구결정(변경)조서_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시가지경관지구	102,700	-	102,700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2,689	-	2,689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교통시설

(1) 도 로

■ 도로 결정조서_변경없음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460	중3-1	중2-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42) 4,250	농성동 22호광장	방림동 2-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6	8	국지도로	215	양림동314	양림동24-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7	8	국지도로	280	양림동22-34	양림동201-71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207	8	국지도로	155	양림동22-34	양림동22-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7	8	국지도로	280	양림동22-34	양림동201-71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207-1	8	국지도로	50	양림동201-71	양림동201-21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8	8	국지도로	154	양림동34-9	양림동24-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0	8	국지도로	(90) 300	양림동66	양림동102-145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85	8	국지도로	270	양림동147	양림동203-3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01	6	국지도로	329	양림동192	양림동225-4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201	6	국지도로	195	양림동 157-13	양림동225-4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04	6	국지도로	64	양림동133-2	양림동122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22	6	국지도로	146	양림동24-56	양림동183-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24	5-6	국지도로	71	양림동24-93	양림동24-8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203	6	국지도로	59	양림동139-3	양림동205	일반도로

■ 도로 결정사유서_변경없음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소로 2-207호선	소로 2-207호선	노선반경 B=6m L=280m → B=6m L=155m, 감 125m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현재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변경함
변경	소로 2-207호선	소로 2-207-1호선	노선반경 B=6m L=280m → B=6m L=50m, 감 230m 노선번호 변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현재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변경함 노선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번호체계에 부합하도록 노선번호 정정

변경	소로 3-201호선	소로 3-201호 선	노선변경B6m L329m→ B6m L195m 감 134m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현재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변경함
폐지	소로 3-203호선	소로 3-203호선	노선폐지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현재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폐지함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 표시번호	면 적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주차장	양림동 201-57	476	-	476		
기정	3	주차장	양림동 202-27	3,415	-	3,415		
기정	4	주차장	양림동 34-9	1,296	-	1,296	소공원 중복결정	

라. 공간시설(변경없음)

(1) 공원

■ 공원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 표시번호	면 적	공원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소공원	양림동 311	279	-	279		
기정	2	소공원	양림동 34-9	1,296	-	1,296	주 차 장 중복결정	
기정	1	문화공원	양림동 52-3	4,071	-	4,071		

(2)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조서(오기정정)

구분	도 표시번호	면 적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양림동 171-5	96	-	96	광고99 11.8.1		
기정	1	공공공지	양림동 183-26	92	-	92	광고99 11.8.1		
기정	1	공공공지	양림동 202-59	102	-	102	광고24 16.2.15		

(3) 공동이용시설

■ 공동이용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 표시번호	면 적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동이용시설	양림동 201-55	734	-	734		
기정	2	공동이용시설	양림동 139-2	609	-	609		

마.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 정비사업시행 시기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사업방식(현지개발방식)

- 정비사업시행 시기 : 2011. 8. 1. ~

- 정비사업의 시행 주체 및 시행방법

사업시행주체	사업내용	사업시행방법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공공시설 설치 및 여건조성	정비기반시설 손실보상 및 공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주택개발	자력개발, 용자신청

3. 정비구역(도시관리계획 결정도 포함) 및 지형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0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4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 「주택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2일

광주광역시장

1. 사업명 : 신용동 현대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신용동현대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백성기(광주 북구 삼각의촌길 3)

현대건설(주) 대표 박동욱(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81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137,573㎡(대지면적:93,937, 도로면적:27,292, 공원 등 면적:16,344)

다. 건축면적 : 12,123.51㎡

라. 연면적 : 272,827.55㎡

마. 층 / 동 : 지하2층, 지상 16층 ~ 29층 / 25동(19개 주동, 6개 부속동)

바. 세대 수 : 1,647세대(74㎡, 84㎡, 104㎡, 135㎡형)

사.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아.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4. 사업기간 : 2020. 08. 01. ~ 2023. 10. 01.

5. 변경내용

- 기초 구조형식 변경(추가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

6. 승인번호 : 광주광역시주택건설사업 2018-제1호(2018.6.28.) 골.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06호

광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장등 시내버스터미널) 변경결정, 지형도면, 실시계획 고시

1. 광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장등 시내버스터미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38조,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지형도면, 실시계획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 대중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8. 11.

광주광역시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가. 자동차정류장

도 표 번호	구 분	면 적	시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2	자동차 정류장	시내버스여객 자동차터미널	북구 장등동 858-3 일원	14,578	감)95	14,483	광고113 '97.7.3 광고168 '97.10.11		

나. 변경 결정 사유서

도 면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자동차정 류장	• 면적변경 - 14,578㎡→14,483㎡(감95㎡)	• 대로1-2호선 중복부분 제척

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지형도면 : 첨부참조

□ 실시계획

1. 사업시행지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장등동 858-3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광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사업
- 명 칭 : 장등 수소버스 수소충전소 구축

3. 사업 규모

- 시설면적 : 14,483㎡
- 건축면적 : 675.28㎡ → 945.35㎡ (증270.04㎡)
- 연 면 적 : 884.98㎡ → 1,155.02㎡ (증270.04㎡)

4.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 성 명 : 광주광역시장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번/지목과 소유권 이외 권리 및 주소, 성명

				1290-1	455-1													신규도로 개설 (도로구간 연장)	630m 신규 개설
변경	봉선로	로	봉선동을 통과하는 도로임을 반영	남구 봉선동 1132-1	남구 봉선동 746	광주광역시 북구 봉선동 746	광주광역시 북구 봉선동 746	도면 참조	2,860	16.7-22.5	20	1	282						남구.342.동구.28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소유자	권리	비고
				지적	편입				
합계 (2필지)				14,652	14,483	-	-	-	
1	북구 장등동	858-3	차	13,897	13,897	-	광주광역시	공유지	
2	북구 장등동	867-6	도	755	586	-	광주광역시	공유지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10호

우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 광주광역시고시 제2019-242호(2019.10.1.), 제2019-250호(2019.10.05.)로 고시된 우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정정사항(오기정정)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3항, 제16조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 정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 북구청 공동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08. 17.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07호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광역도로의 도로구간 변경 결정 고시(정정)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8-101호(2018.5.18.)의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광역도로(봉선로)의 도로구간 변경 고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1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고 시 일 : 2021. 08. 11.

2. 고시방법 : 공보 및 시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관할 자치구 도로명주소

업무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문의전화

- 광주광역시청 : 062-613-4581 (FAX : 062-613-4569)
- 광주광역시 동구청 : 062-608-3184 (FAX : 062-608-3208)

나. 주 소 : (61945) 광주 서구 내방로 111, 10층

다.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 참조

5. 도로구간 도면(생략)

6. 광역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결정 조서

연번	구분	도로명	도로명 부여 사유	관할 구역	행정 구역	행정 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길이 (m)	폭 (m)	기초간격 (m)	기초번호	초번호	변경사유	비고
1	당초	봉선로	로	봉선동을 통과하는 도로임을 반영	남구 봉선동	남구 봉선동	남구 봉선동 주월동	남구 봉선동 용산동	도면 참조	2,840	16.7-22.5	20	1	280	광주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	

◆ 정정사유 : 기 고시(광주광역시고시 제2019-250) 오기정정

1.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없음)

2.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정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나.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다. 사업시행방법 (변경없음)

라. 정비계획(정정)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정정)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기정)

· 공원.녹지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	생활권 공원	어린이공원 - ①	북구 우산동 470번지 일대	3,830.00	-	-	
기정	-	생활권 공원	어린이공원 - ②	북구 우산동 470번지 일대	3,917.60	-	-	
기정	-	생활권 공원	소공원	북구 우산동 470번지 일대	858.70	-	-	

(정정)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 공원·녹지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	생활권공원	어린이공원 - ①	북구 우산동 470번지 일대	3,790.10	-	-	
기정	-	생활권공원	어린이공원 - ②	북구 우산동 470번지 일대	3,078.70	-	-	
기정	-	생활권공원	소공원	북구 우산동 470번지 일대	858.70	-	-	

※ 변경사유 : 오기정정

○ 건축물 밀도 계획(변경없음)

마. 변경사유 : 오기정정

바. 관련도면(변경없음)

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1-92호

광주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남구 주월동 957-9번지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 주변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8. 17.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84	8	국지도로	145	대로1-5호선 남구 주월동 957-10대	소로3-65호선 남구 주월동 957-16대	일반도로	전고96(86.64)(노선분리, 노선번호변경)
변경	소로	2	84	8-10	국지도로	145	대로1-5호선 남구 주월동 957-10대	소로3-65호선 남구 주월동 957-16대	일반도로	

■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84	소로 2-84	·폭원변경 - 폭원 : 8m → 8m-10m	·기부채납에 따른 도로폭원 변경

※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1-93호

광주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남구 진월동 330-1번지 일원 효덕동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8. 17.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교통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68	주차장	남구 진월동 318-2번지 일원	3,009	감) 878	2,131	광주남구고시 제2017-26호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568	주차장	·주차장 변경 - 면적 : 3,009㎡ → 2,131㎡ (감 878㎡)	·효덕동 공영주차장의 현 조성 현황에 따라 변경코자 함

※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결정및지형도면고시도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96호

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38호(2021.03.26)로 고시된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453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93호(2021.08.04)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고시됨에 따라 주택법 19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건축과, 공동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08. 15.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가	센트럴시티 서비스타워스 지역주택조합	북구 용두동 453번지 일원	30,332.9	-	30,332.9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0,332.9	-	30,332.9	100.0	
주거지역	소계	30,306.9	-	30,306.9	99.8
	제1종일반주거지역	5,636.0	-	5,636.0	18.6
	제2종일반주거지역	24,670.9	-	24,670.9	81.2
녹지지역	소계	26.0	-	26.0	0.2
	생산녹지지역	22.0	-	22.0	0.1
	자연녹지지역	4.0	-	4.0	0.1

나. 용도지구

○ 용도지구 : “지정없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구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4	20-23 (20-23) 도로	집산 (178)	2,046	양산동 중1-166	용두동 450-1	일반 도로	-	전고147'76.86	
기정	중로	2	82	15 (3)	집산 도로 (115)	230	용두동 산74-8입	용두동 486-13도	일반 도로	70호 공원	전고2'36.0425	
신설	소로	1	414	10 (10)	국지 도로 (160)	160	용두동 산82-2입	신용동 산34-22입 중로3-77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2	817	8 (8)	국지 도로 (268)	268	용두동 산77입	신용동 산34-22입 소로1-364	보행자 우선 도로	-	-	

주) ()는 구역내 폭 및 연장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소로1-414	노선신설 -B=10m, L=160m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도로 지정
-	소로2-817	노선신설 -B=8m, L=268m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도로 지정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획지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22,132.5	
-	공동	북구 용두동 453번지 일원	22,132.5	공동주택용지 (대지합필)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획지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공동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193% 이하
		높 이	23층 이하
		배 치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인 커뮤니티공간 및 채광·통풍 등을 고려하여 배치 지붕 :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하고 과도한 장식은 지양 담장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생활타리 담장 또는 조경담장 권장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 계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97호

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53호(2021.4.16)로 고시된 광주광역시 북구 용 두동 435-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92호(2021.08.04)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고시됨에 따라 주택법 19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건축과, 공동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8. 15.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가	프라임시티 지역주택조합	북구 용두동 435-1번지 일원	32,609	-	32,609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2,609	-	32,609	100.0	
주거지역	소 계	32,609	-	32,609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991	-	3,991	12.2
	제2종일반주거지역	28,618	-	28,618	87.8

나. 용도지구

○ 용도지구 : “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구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4	20-23 (20-23) 도로	집산 (197)	2,046	양산동 중1-166	용두동 450-1	일반 도로	-	전고147'76.86	
기정	중로	3	638	12 (12)	집산 도로 (205)	205	중로2-82 용두동 산76-2입	중로3-6 용두동 424위	일반 도로	-	북고78'20.5.15	
기정	중로	3	639	12 (12)	집산 도로 (152)	152	중로1-24 용두동 509대	용두동 424위	일반 도로	-	북고78'20.5.15	
신설	소로	1	413	10 (10)	국지 도로	95	중로3-639 용두동 424-13입	소로1-33 363전	일반 도로	-	-	

주) ()는 구역내 폭 및 연장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소로1-413	노선신설 -B=10m, L=95m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도로 지정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획지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23,181	
-	공동	북구 용두동 435-1번지 일원	23,181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획지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공동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5% 이하
용적률	• 190% 이하
높이	• 23층 이하
배치	• 주민 커뮤니티공간 및 채광·통풍 등을 고려하여 배치
형태	• 지붕 :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하고 과도한 장식은 지양 • 담장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생울타리 담장 또는 조정담장 권장 • 입면 : 입면 특화계획 수립·반영(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름)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시행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1-103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52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인 도산7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52호선) 개설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재생과 및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8. 17.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5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송정소로 2-52호선) 사업
○ 명 칭 : 도산7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

○ 사업 시행면적 : (당초) 1,075㎡ → (변경) 1,070㎡
○ 사업의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노선명	연장(m)	폭원(m)	시점	종점	금 회 시 행				
					연장(m)	면적(㎡)		시점	종점
						당초	변경		
(송정)소로 2-52호선	484	8	송정동 893-3	도산동 854-1	155	1,075	1,070	도산동 895-2	도산동 921-1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도시재생과)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송정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조서

○ 편입 토지조서(1)

번호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	지번	지적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분	
합계		30필지	1,853	1,070							
1	광산구 도산동	921-17	도	382	6	1/1	국토교통부	국		당초	
	광산구 도산동	921-17	도	382	6	1/1	국토교통부	국		변경	
2	광산구 도산동	921-12	답	41	22	1/2	광주 서구 화정로 211, 202동 804호	임경만		당초	
	광산구 도산동	921-19	답	22	22	1/2	광주 서구 화정로 211, 202동 804호	임경천		변경	
3	광산구 도산동	882-1	대	170	15	1/2	광주 서구 화정로 211, 202동 804호	임경만		당초	
	광산구 도산동	882-29	대	13	13	1/2	광주 서구 화정로 211, 202동 804호	임경천		변경	
4	광산구 도산동	882-27	대	38	38	1/1	광산군 송정읍 송정리 919	선재방		당초	
	광산구 도산동	882-31	대	31	31	1/1	광산군 송정읍 송정리 919	선재방		변경	
5	광산구 도산동	883-43	도	48	7	1/1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학림길 12-12	조정석		당초	
	광산구 도산동	883-60	도	7	7	1/1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학림길 12-12	조정석		변경	
6	광산구 도산동	883-7	대	144	6	1/1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학림길 12-12	조정석		당초	
	광산구 도산동	883-55	대	9	9	1/1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학림길 12-12	조정석		변경	
7	광산구 도산동	883-37	답	142	7	1/1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학림길 12-12	조정석		당초	
	광산구 도산동	883-57	답	10	10	1/1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학림길 12-12	조정석		변경	
8	광산구 도산동	883-39	전	449	20	1/1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학림길 12-12	조정석	광주 광산구 내상로 3	송정농업협동조합	당초
	광산구 도산동	883-58	전	20	20	1/1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학림길 12-12	조정석	광주 광산구 내상로 3	송정농업협동조합	변경

○ 편입 토지조서(2)

번호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	지번	지적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분	
9	광산구 도산동	883-41	전	438	10	1/1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학림길 12-12	조정석		당초	
	광산구 도산동	883-59	전	10	10	1/1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학림길 12-12	조정석		변경	
10	광산구 도산동	890-14	답	107	3	1/2	광주 광산구 신도산길 103	김대래			
	광산구 도산동	890-19	답	4	4	1/2	광주 광산구 우산로 17, 201동 205호(우산동, 우산빛어울체)	정영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135-3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당초
11	광산구 도산동	889-12	도	114	79	1/1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			당초
	광산구 도산동	889-12	도	114	79	1/1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			변경
12	광산구 도산동	895-7	전	188	10	1/3	광주 광산구 송도로20번길 28, 101동 1207호 (송정동, 광신프로그램)	김현섭			
						1/3	광주 광산구 송도로182번길 55, 102동 1007호 (도산동, 1차대주과코빌)	노지화	광주 광산구 삼부대로 313(신촌동)	축산업협동조합	당초
						1/3	광주 광산구 남동길 24(도산동)	박형경			
광산구 도산동	895-12	전	7	7	1/3	광주 광산구 송도로20번길 28, 101동 1207호 (송정동, 광신프로그램)	김현섭			변경	
					1/3	광주 광산구 송도로182번길 55,	노지화	광주 광산구	축산업협동조합		

																	102동 1007호 (도산동 1차대주파크빌)		상무대로 313(신촌동)			
																	1/3	광주 광산구 남동길 24(도산동)			박형경	
13	광산구 도산동	921-11	도	27	27	1/1												광주 광산구 남동길 24(도산동)	박형경			
	광산구 도산동	921-11	도	27	27	1/1												광산구		공		당초
14	광산구 도산동	921-18	담	330	16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326, 315호(대치동)	이도선			당초
	광산구 도산동	921-20	담	30	30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326, 315호(대치동)	이도선			변경
15	광산구 도산동	882-11	담	61	8	1/1												광산군 송정읍 송정리 919	선재봉			당초
	광산구 도산동	882-30	담	10	10	1/1												광산군 송정읍 송정리 919	선재봉			변경
16	광산구 도산동	882-18	대	70	53	1/1												광산군 송정읍 송정리 919	선재봉			당초
	광산구 도산동	882-18	대	70	53	1/1												광산군 송정읍 송정리 919	선재봉			변경
17	광산구 도산동	883-48	도	1	1	1/1												광산군 송정읍 도산리 1064	조점욱			당초
	광산구 도산동	883-48	도	1	1	1/1												광산군 송정읍 도산리 1064	조점욱			변경

o 편입 토지조서(3)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권리구분		
	동	지번		지적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8	광산구 도산동	883-20	도	366	11	1/1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137, 103동 1702호(쌍촌동, 일신아파트)	조철중			당초	
	광산구 도산동	883-20	도	366	11	1/1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137, 103동 1702호(쌍촌동, 일신아파트)	조철중			변경	
19	광산구 도산동	883-28	대	175	1	1/1	광주 광산구 송정로52번길 50-4(도산동)	김명신			당초	
	광산구 도산동	883-56	대	1	1	1/1	광주 광산구 송정로52번길 50-4(도산동)	김명신			변경	
20	광산구 도산동	883-6	도	48	14	1/1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학림길 12-12	조정석			당초	
	광산구 도산동	883-54	도	14	14	1/1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학림길 12-12	조정석			변경	
21	광산구 도산동	883-45	대	7	7	1/1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학림길 12-12	조정석			당초	
	광산구 도산동	883-45	대	7	7	1/1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학림길 12-12	조정석			변경	
22	광산구 도산동	883-47	담	47	24	1/1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학림길 12-12	조정석			당초	
	광산구 도산동	883-47	담	24	24	1/1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학림길 12-12	조정석			변경	
23	광산구 도산동	883-2	대	346	63		317 /346	광주 서구 치평로 35, 204동 206호(치평동, 금호영웅아파트)	전 의천	광주 광산구 송정동 756-4	송정농업 협동조합	당초
							29 /346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학림길 12-12	조정석			
	광산구 도산동	883-52	대	61	61		317 /346	광주 서구 치평로 35, 204동 206호(치평동, 금호영웅아파트)	전 의천	광주 광산구 송정동 756-4	송정농업 협동조합	변경
24	광산구 도산동	882-22	도	257	257	1/1						당초
	광산구 도산동	882-22	도	257	257	1/1						변경
25	광산구 도산동	883-4	전	307	64		219 /307	광주 광산구 송정로52번길 54(도산동)	주은정			당초
							88 /307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학림길 12-12	조정석			
	광산구 도산동	883-53	전	61	61		219 /307	광주 광산구 송정로52번길 54(도산동)	주은정			변경
26	광산구 도산동	890-8	도	60	60	1/1						당초
	광산구 도산동	890-8	도	60	60	1/1						변경
27	광산구 도산동	890-9	담	47	47	1/1						당초
	광산구 도산동	890-9	담	47	47	1/1						변경
28	광산구 도산동	890-2	대	212	39	1/1						당초
	광산구	890-17	대	37	37	1/1						변경

	도산동								송정로52번길 62(도산동)		광산구 장신로 153	동조합	
29	광산구 도산동	890-6	담	507	60	1/1			광주 광산구 목련로 41, 209동 1001호(산정동, 무영예시당)	박민정	광주 광산구 내상로 3	송정농업협 동조합	당초
	광산구 도산동	890-18	담	58	58	1/1			광주 광산구 목련로 41, 209동 1001호(산정동, 무영예시당)	박민정	광주 광산구 내상로 3	송정농업협 동조합	변경
30	광산구 도산동	895-2	전	820	100	1/1			광주 광산구 목련로 41, 209동 502호(영천마을, 주공9단지)	정경섭			당초
	광산구 도산동	895-10	전	93	93	1/1			광주 광산구 목련로 41, 209동 502호(영천마을, 주공9단지)	정경섭			변경

※지장물조서 및 관계도서는 광산구 도시재생과에 비치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1504호

광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 8. 11.

광주광역시청

1. 사업시행지

-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5-10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사업
- 명 칭 :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공사

3. 사업규모 및 내용

- 사업규모 : 10,894.0㎡
- 건 축 물 : 1동 / 지상4층, 지하1층
- 건 축 면 적 : 2,177.74㎡
- 건축면적 : 7,860.09㎡
- 사업내용 :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 성 명 : 광주광역시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착수일(건축허가일) : 2019. 8. 26.
- 준공일(사용승인일) : 2021. 8. 5.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1-1072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서남동 한강식당 뒤편 도로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고시(동고제2020-89호)한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류14호선 및 소로3류15호선)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기 위해 관계도서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열람공고 합니다.

2021. 8. 17.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1. 사업의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3-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서남동 한강식당 뒤편 도로개설사업(소로3-14호선, 소로3-15호선)

3. 면적 및 규모(변경)

노선명	총연장(m)	기시행(m)	금회시행(m)	금후시행(m)	비고
소로3-14호선	•L=77m •B=6m	-	•L=77m •B=6m	-	
소로3-15호선	•L=200m •B=6m	•L=189m •B=6m	•L=11m •B=6m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나. 성 명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당초 2020. 10. 15.)

나. 준공예정일 : 변경인가고시일로부터 36개월

6. 도시계획 도로(확장)개설 평면계획도 및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 광주광역시 동구청 건설과에 비치

7. 열람공고기간

○ 열람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청 건설과(☎062-608-2822)

※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21-1639호

광주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광주도시계획시설사업인 흑석동 55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 8. 17.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사업시행자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흑석동 55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명 칭 : 광주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주차장(1개소)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15	노외주차장	흑석동	529.6	건고 123 '96. 4. 29.	수완지구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흑석동 535번지

○ 성 명 : 손창호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착 수 일 : 2021. 7. 1.

○ 준 공 일 : 2021. 7. 28.

6. 준공도서 : 게재생략(도시계획과 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21-1649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1.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인 도시계획도로(소로1-7호선 등 3개 노선) 개설공사 시행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99조에 따른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오니,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 8. 17.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인가신청의 요지

○ 광산구 지족동 산56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지족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한 주변 도시계획도로(소로1-7호선 등 3개노선)를 개설하여 관리청에 기부채납 하고자 함.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7호선 등 3개노선) 개설사업

3. 사업의 위치 및 규모(변경)

○ 당초(면적: 5,220.0㎡)

노선명	연장(m)	폭원(m)	시 점	종 점	금 회 시 행			사용 형태
					연장(m)	시 점	종 점	
소로1-7	472	10	중1-172 용동 산11-1	소1-8 지족동 732답	49	지족동 732답	지족동 732답	일반 도로
소로1-8	1,014	10	대 1-17 지족동 83답	중1-172 지족동 563-1전	356	용동 55-14구	지족동 산54-2일	일반 도로
소로2-45	356	8	중1-172 지족동 658답	소1-8 지족동 502전	113	지족동 730-3답	지족동 산54-2일	일반 도로

○ 변경(면적: 5,559.0㎡)

노선명	연장(m)	폭원(m)	시 점	종 점	금 회 시 행			사용 형태
					연장(m)	시 점	종 점	
소로1-7	472	10	용동 732-1답	지족동 732답	56	지족동 732-1답	소1-8 지족동 732-6답	일반 도로
소로1-8	356	10	용동 82-2일	지족동 산54-2일	356	대1-17 용동 688-1도	소2-45 지족동 731-11일	일반 도로
소로2-45	110	8	지족동 산54-2일	지족동 730-3답	113	중1-172 지족동 658답	소1-8 지족동 502전	일반 도로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법인의 명칭 및 주소

- 유한회사 에스케이공업 대표자 김광인/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금성산성길 71

○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김광인/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금성산성길 7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 수 : 2020. 3. 16.

○ 준공예정 : 2022. 3. 15.

6. 열람(주민의견 제출) 기간 및 장소

○ 일 시 : 광주시보 게재일로부터 15일간(2021. 8. 17. ~ 8. 31.)

○ 장 소 : 광산구 도시계획과(960-8523)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내역(변경)

○ 토지조서

- (소로1-7호선)

연번	토 지 소 제	지번		지목		지적면적(㎡)		기부채납면적(㎡)		기부채납 인정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지족동	732-6	732-6	답	답	746	746	517	517	517	517	김 상 원	주택도시보 증공사	
2	지족동	732-9	732-9	답	답	26	26	26	26	26	26	주택도시보 증공사	주택도시보 증공사	
3	지족동	-	732-10	답	답	-	101	-	7	-	7	주택도시보 증공사	주택도시보 증공사	
소 계						772	873	543	550	543	550			

- (소로1-8호선)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기부채납면적(m ²)		기부채납인정면적(m ²)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용동	55-15	55-15	구	구	7	7	7	7	7	7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	용동	82-3	82-3	임	임	210	210	210	210	210	210	문영용	주택도시보증공사	
3	용동	83-3	83-3	구	구	236	236	236	236	236	236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4	지족동	463-2	463-2	구	구	3	3	3	3	3	3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5	지족동	466-6	466-6	구	구	97	97	97	97	97	97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6	지족동	466-8	466-8	담	담	168	168	168	168	168	168	(유)에스케이공업	주택도시보증공사	
7	지족동	468-3	468-3	담	담	437	437	437	437	437	437	김미라	주택도시보증공사	
8	지족동	468-5	468-5	구	구	106	106	106	106	106	106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9	지족동	470-3	470-3	담	담	8	8	8	8	8	8	(유)에스케이공업	주택도시보증공사	
10	지족동	732-6	732-6	담	담	746	746	229	229	229	229	김상원	주택도시보증공사	
11	지족동	732-10	732-10	담	담	101	101	101	94	101	94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12	지족동	732-12	732-12	담	담	190	190	190	190	190	190	김상원	주택도시보증공사	
13	지족동	733-2	733-2	담	담	248	248	248	248	248	248	(유)에스케이공업	주택도시보증공사	
14	지족동	734	734	담	잡	17	17	17	17	17	17	국(국토교통부)	국(기획재정부)	
15	지족동	743-9	743-9	구	잡	41	41	41	41	41	41	국(국토교통부)	국(기획재정부)	
16	지족동	743-11	743-11	구	잡	229	229	229	229	229	229	국(국토교통부)	국(기획재정부)	
17	지족동	743-13	743-13	구	잡	73	73	73	73	73	73	국(국토교통부)	국(기획재정부)	
18	지족동	756-1	756-1	도	도	33	33	33	33	33	33	국(국토교통부)	국(기획재정부)	
19	지족동	758-1	758-1	도	잡	65	65	65	65	65	65	국(국토교통부)	국(기획재정부)	
20	지족동	762-1	762-1	도	잡	19	19	19	19	19	19	국(국토교통부)	국(기획재정부)	
21	지족동	731-15	731-15	임	임	81	81	81	81	81	81	김상원	주택도시보증공사	
22	지족동	731-11	731-11	임	임	320	320	211	211	211	211	(유)에스케이공업	주택도시보증공사	
23	지족동	731-13	731-13	임	임	161	161	161	161	161	161	(유)에스케이공업	주택도시보증공사	
24	지족동	731-10	731-10	임	임	153	153	1	1	1	1	김호순	주택도시보증공사	
25	용동	84-2	84-2	구	구	322	322	322	322	322	322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6	용동	410-1	410-1	대	대	1	1	1	1	1	1	이정후	주택도시보증공사	
27	용동	411-1	411-1	임	임	9	9	9	9	9	9	이정후	주택도시보증공사	
28	용동	644-5	644-5	구	잡	372	372	372	372	372	372	국(동립축산식품부)	국(기획재정부)	
29	용동	646-1	646-1	도	잡	86	86	86	86	86	86	국(국토교통부)	국(기획재정부)	
30	용동	-	55-12	담		58		6		6		홍복남	홍복남	
31	용동	-	55-14	구		87		87		87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32	용동	-	82-2	임		51		51		51		유한회사에스케이공업	유한회사에스케이공업	
33	용동	-	665-2	도		323		61		61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품부)	
34	용동	-	666-1	구		1,222		80		80		국(농림축산식품부)	국(농림축산식품부)	
35	용동	-	687-1	도		5,536		54		5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소 계						4,539	3,761	4,093	3,761	4,093	3,761			

- (소로2-45호선)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기부채납면적(m ²)		기부채납인정면적(m ²)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지족동	730-6	730-6	담	담	30	30	30	30	30	30	(유)에스케이공업	주택도시보증공사	
2	지족동	731-7	731-7	전	전	331	331	331	331	331	331	(유)에스케이공업	주택도시보증공사	
3	지족동	743-7	743-7	구	잡	163	163	163	163	163	163	국(국토교통부)	국(기획재정부)	
4	지족동	731-8	731-8	임	임	10	10	10	10	10	10	김호순	주택도시보증공사	
5	지족동	731-9	731-9	임	임	121	121	121	121	121	121	김호순	주택도시보증공사	
6	용동	731-10	731-10	임	임	153	153	152	152	152	152	김호순	주택도시보증공사	
7	지족동	731-11	731-11	임	임	320	109	109	109	109	109	(유)에스케이공업	주택도시보증공사	
소 계						1,128	1,128	916	916	916	916			

8. 국제계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관리청 >

o 당초(면적: 5,220.0m²)

노선명	연장(m)	폭원(m)	시점	종점	금회시행			비고
					연장(m)	시점	종점	
소로 1-7	472	10	중1-172 용동 산11-1	소1-8 지족동 732담	49	지족동 732담	지족동 732담	개설 후 광산구 건설과 기부채납
소로1-8	1,014	10	대 1-17 지족동 83담	중1-172 지족동 563-1전	356	용동 55-14구	지족동 산54-2임	
소로2-45	356	8	중1-172 지족동 658담	소1-8 지족동 502전	113	지족동 730-3담	지족동 산54-2임	

o 변경(면적: 5,559.0m²)

노선명	연장(m)	폭원(m)	시점	종점	금회시행			비고
					연장(m)	시점	종점	
소로1-7	472	10	용동 732-1담	지족동 732담	56	지족동 732-1담	소1-8 지족동 732-6담	개설 후 광산구 건설과 기부채납
소로1-8	356	10	용동 82-2임	지족동 산54-2임	356	대1-17 용동 688-1도	소2-45 지족동 731-11임	
소로2-45	110	8	지족동 산54-2임	지족동 730-3담	113	지족동 730-3담	지족동 산54-2임	